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배출가스허용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저공해 조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1
1.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4
1.1.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4
1.1.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4
1.1.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5
2. 자동차 검사 7
2.1. 자동차 종합검사 7
2.1.1.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7
2.2. 자동차 정기검사 등 10
2.2.1.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10
2.2.2. 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14
2.3. 수시 점검 15
2.3.1.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15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17
3.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17
3.1.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7
3.1.2. 자동차 운행제한 20
4. 저공해 조치 25
4.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25
4.1.1.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25
4.1.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27

1.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1.1.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1.1.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아래 표에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함. 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본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 ※ "제작차"란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하는 자가 제작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본문).

▪ 제작차배출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1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2	탄화수소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
4	알데히드	매연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입자상물질
6	암모니아	암모니아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운행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 ※ "운행차"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소유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전단).

▪ 검사방법에 따른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4).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제작일자	검사항목(매연)
1992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3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2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구분	제작일자	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3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2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광식)

구분	제작일자	매연
차량 총 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3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2001년 12월 31일 이전	20%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15% 이하

※ 그 밖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검사

2.1. 자동차 종합검사

2.1.1. 종합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 정기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 ①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대기환경 규제지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
>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 유효기간

▪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라 함)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 종합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 자동차종합검사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등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영치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과태료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5).

형사처벌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2.2. 자동차 정기검사 등

2.2.1.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참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배출가스 정기검사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본문).

※ 다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4조의2).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본문).

※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 위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및 별표 22).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검사기준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소음 검사

√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검사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제19호)

· 동일성 확인, 주행장치, 조향장치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등 19개 항목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도로-자동차검사-정기검사-검사기준 및 방법 참고>

정기검사의 주기

▪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함)마다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

구분				검사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5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 제재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5호의4, 제15호의5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소목)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 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 그 밖에 자동차정기검사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정밀검사

정밀검사 대상

▪ 다음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 대기관리권역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다음의 지역
  -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자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및 방법 등

▪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수시 점검

2.3.1. 수시 점검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수시 점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 자동차 운행자는 위에 따른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11호).

수시 점검 방법 및 면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자동차 개선명령 등

개선명령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

▪ 이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해야 함)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3항 본문).

▪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 전단).

운행정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확인검사를 15일 이내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

※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 및 제94조제4항제7호).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3.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3.1.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 ※ 배출가스등급이란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 연료품질등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함)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위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합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이 필요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이하, 입자상물질: 0.005g/㎞이하)
4등급		1988년~199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이하)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이하, 입자상물질: 0.050g/㎞이하)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연식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 연식(차량연식이 아님)]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 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13년, 201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3등급		2006년, 2009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4등급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5등급		2000년이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3.1.2. 자동차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운행제한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첫 번째 단계	2017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 번째 단계	2018년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이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
세 번째 단계	2020년까지 경기도 28개시(3개군 제외)로 확대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1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운행제한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합니다.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mecar-운행제한-운행제한 제도-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에 따른 운행제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행제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2.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다만, 위 1., 2.에 해당지 않더라도 긴급자동차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2항).

과태료 부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5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위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대상지역 및 절차 등

▪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간은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함. 이하 같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함. 이하 같음)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휴일 미시행)
  - √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단속: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 제외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영업용 등 자동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된 차량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휴일 미시행)
  - √ 대상: 서울시 전 지역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
  - √ 시민편의시설(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 √ 제외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ecar-운행제한-운행제한 제도-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모든 차량의 서울 도심(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함)으로의 진입이 금지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이를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20만원의 1/2 가감 가능, 3회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내부 16.7㎢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됩니다(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저공해 조치

4.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4.1.1.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저공해 조치의 종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4호).

▪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대상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3.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 그 밖에 태양광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4.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5.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6.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7.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의 1. 3. 4. 및 6.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 이하 “소유자”라 함)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2호).

▪ 자동차의 소유자가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5제1항 전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비용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등”이라 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적용 조건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1회에 한정해 부착, 개조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저감효율이 높은 장치로의 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시에는 당초 제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지원한 비용을 제외한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단서).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

※ 이때 검사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정함(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환경정보-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혜택 및 의무사항)

특정경유자동차등 조기폐차 지원

▪ 노후차량 또는 검사(정밀검사를 포함)유효기간 이내인 차량을 조기에 폐차(이하 "조기폐차"라 함) 하려는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본문).

-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다만, 확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이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동차 등록원부 및 검사결과 열람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조기폐차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와 5등급 휘발유·가스 등 자동차(경형·소형·중형차는 1987년 12월 31일 이전, 대형·초대형차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3.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5.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총액은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 ※ 조기폐차 보조금의 상한액 및 지원율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점검

저감장치 등 성능유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1항).

▹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 위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제3항).

> ※ 성능유지확인 검사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저감장치 등 저감효율 확인검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

▹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며,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6제1항 및 제2항).

▹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8제1항).

√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

√ 저공해엔진: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